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 상승

☑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클라우드 이용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안 제14조의2제1항

현행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시 그 기준이 모호하며,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선 또한,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안 제14조의2제4항·제14조의2제5항

현행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개선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

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현행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 등의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이 필요



유권해석반 운영

2022년 5월 9일 ~ 7월 31일

금융회사들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 **접수기간** · 2022년 5월 9일 ~ 5월 27일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022년 8월 ~ 10월)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 ☑ **질의대상** ·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2022년 8월 ~ 10월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2022년 11월 ~ 12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